

#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 1. 개정이유

- 「공탁법」(법률 제20458호, 2024. 10. 16. 공포, 2025. 1. 17. 시행)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의 제출 방식 등을 정함  
(안 제20조)

## 3.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

##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의 제목 “공탁물 회수동의서 제출 절차”를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 제출 절차”로 하고, 제20조의 제목 “(공탁물 회수동의서 제출)”을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 제출)”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공탁물 회수동의서(이하 “회수동의서”라 한다)”를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수동의서가”를 “제1항의 서면이”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 중 “회수동의서”를 각각 “제1항의 서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은 공탁자가 「민법」 제487조에 따라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별표 1, 별지 제2호 양식, 별지 제13호 양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4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별표 1]

양식 목록

양식 번호	명 칭	관련 공탁규칙 조문	비 고
1	금전 공탁서(형사공탁)	제20조, 제82조	제3조부터 제6조까지
2	형사공탁 공고	제84조	제8조
3	형사공탁 정정공고	제84조	제8조제3항
4	형사공탁사실통지서	제85조제1항	제9조제1항
5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서	제85조제1항	제9조제2항
6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형사공탁)	제23조제1항	
7	형사공탁사실 고지서 (재판양식 B4970)	제85조제2항	제9조제4항
8	형사공탁정정사실 고지서 (재판양식 B4970-1)	제85조제2항	제9조제4항
9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요청서(재판양식 B4971)	제86조제5항	제13조
10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재판양식 B4972)	제86조제1항	제11조
11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서 (재판양식 B4973)	제86조제2항	제12조제1항
12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전화 등)요청 접수처리 (재판양식 B4974)	제86조제5항	제13조
13	공탁물 회수동의서	제49조의2	제20조
14	공탁물 수령거절의사 통고서	제49조의2	제20조

[별지 제2호 양식]

## ○ ○ 법 원 형사공탁 공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정  
으로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법원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탁소 및 공탁번호
2. 공탁신청 연월일
3. 공탁물
4. 형사사건번호
5. 검찰사건번호
6. 피공탁자
7. 공탁물 출급 ·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와 관련된 사항

가. 피공탁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증명서)가 공탁소에 발급·송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규칙 제86조 제2항의 구분에 따른 법원 또는 검찰에 증명서의 발급·송  
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86조 제5항). 증명서 발급·송부에 대한 구체적  
인 사항은 해당 법원·검찰 또는 공탁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탁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한 후 출급할 수 있습니다.

다. 피공탁자는 해당 공탁소에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를 제출  
할 경우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고, 우편으로 이를 제출할 경우에는 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인감증명  
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에 서명한 경우: 발급  
일로부터 3개월 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증 첨부).

8. 공탁물 회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와 관련된 사항

## 공탁물 회수동의서

공탁번호		년 금 제 호			
공탁금액					
형사본안사건		법원명	형사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명 (공탁자)
피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첨부서류1)					
<p>위 공탁자가 민법 제489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피공탁자 성명 <span style="float: right;">(인 또는 서명)</span></p> <p style="text-align: center;">연락처(휴대전화)</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법원                지원    공탁관 귀하</p>					

1)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공탁물 회수동의서에 피공탁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에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탁물 수령거절의사 통고서

공탁번호		년 금 제 호			
공탁금액					
형사본안사건		법원명	형사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명 (공탁자)
피공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첨부서류2)					
<p>피공탁자는 공탁자가 제공한 공탁금에 대하여 수령거절의사를 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피공탁자 성명 (인 또는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연락처(휴대전화)</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법원 지원 공탁관 귀하</p>					

2)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공탁물 수령거절의사 통고서에 피공탁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에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장 <u>공탁물 회수동의서 제출 절차</u></p> <p>제20조(<u>공탁물 회수동의서 제출</u>) ① 피공탁자는 해당 공탁소에 <u>공탁물 회수동의서(이하 “회수동의서”라 한다)</u>를 제출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우편으로 <u>회수동의서</u>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그 신분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p> <p>1. <u>회수동의서</u>에 인감도장이 날인된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인감증명서</p> <p>2. <u>회수동의서</u>에 서명한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p> <p>&lt;신설&gt;</p>	<p>제7장 <u>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 제출 절차</u></p> <p>제20조(<u>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 제출</u>) ① ----- -----<u>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제1항의 서면</u> ----- ----- -----.</p> <p>1. <u>제1항의 서면</u>----- ----- -----</p> <p>2. <u>제1항의 서면</u>----- ----- -----</p> <p>④ <u>제2항 및 제3항은 공탁자가 「민법」 제487조에 따라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경우에도 적용된다.</u></p>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7624